

유가연동제의 효율적 실시방안



康星喆

<대한석유협회 부회장>

I. 머리말

- '90년대 들어 석유시장은 개방화, 경쟁화 및 환경 규제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
- 정부는 '94년 중 유가연동제를 거쳐 전면적인 유가자유화 실시 계획
- 현 유가관리제도의 공로 및 부작용
- 저유가 안정공급 우선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물가안정에 큰 공헌
- '80년대 중반 이후 그 역기능이 점차적으로 대두
-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됨.
- 유가자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석유산업의 중요과제
- 정산요인의 최소화 가능
- 수급안정성 도모
- 정부의 유가조정부담 완화

II. 정부의 유가자유화 추진계획

1. 유가관리의 현실태

가. 정부에 의한 가격 고시제도

- 석유사업법 제15조(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)에 의거 정부가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을 책정, 고시.
- '83년부터 민생 또는 산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유종부터 가격자유화 실시.
- '92년 말 현재 물량상으로 45%, 판매고상으로 50%가 자유화.
- *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특성상 일부 유종이라도 정부 규제가 존재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 가격고시제의 효과가 있음.

<표-1> 국내 석유가격 자유화 추진 협황

자유화 일자	유종	비고
1983. 2. 6	제트유	• 국제가격에 연동 조정
"	용제	• 국내수급상황을 감안, 결정
1988. 11. 2	아스팔트	"
1989. 3. 27	나프타	• 국제가격에 연동 조정
1990. 9. 15	한전 B-C유	• 국제가격으로 공급
1991. 9. 1	휘발유	• 행정지도가격
"	등유	"

· 현 고시유종 : 경유, 냉кер유, LPG(프로판, 부탄)

나. 정유5사 평균 유가관리제도

- 세전공장도 가격은 정유5사 가중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산정.
- 정유업계의 원가보상수준에서 유가 결정 (수익 = 비용)
- 공장도단계의 석유제품간 상대가격구조는 판매복합단가 범위내에서 제반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.
- 휘발유등 경질유는 상대적 고가유지, B-C유등 중질유는 상대적 저가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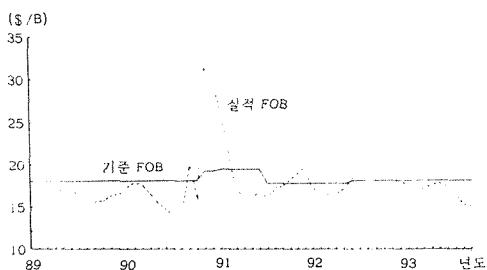
다. 정유사 이익관리

- 정유사 허용이익을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세후 10%로 제한
- 정부의 보수적 유가관리로 허용이익에도 미달
- 실발생 비용의 일부 불인정 및 반영시기 지연

라. 석유사업기금등의 조정을 통한 유가수준 관리

- 석유사업기금과 관세율 조정으로 국내유가를 상당

<그림-1> 기준원유가와 도입원유가의 비교



기간 일정수준으로 유지

- 원유도입가격과 환율변동등에 의한 국내유가 변동 요인을 최소화
- 석유사업기금을 정유사 이익관리수단으로 활용
- * 인위적인 유가안정화로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저하와 국제유가 급등시에도 국내유가의 저가유지로 석유과소비 초래

2. 유가자유화 기본방향(신경제 5개년 계획상)

가. '94년중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에 국내유가

<표-2> 정유부문 세후 결산순이익과 정부허용이익

(단위: 억 원)

	1989	1990	1991	1992
정유부문 세후순이익(A)	454	14	▲300	▲10
정부 허용이익(B)	644	772	773	1,008
차 OI (A - B)	▲190	▲758	▲1,073	▲1,018

(주) 정유부문 세후 순이익은 단순정제 부문기준임. (고도화부문제외)

를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 시행

나. 유가연동제 시행후 경쟁여건을 정비하여 완전
자유화로 이행

- 정유사에 대한 이윤규제는 가격자유화시 철폐
- 다.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로 접근
- 휘발유/경유 및 LPG/LNG간의 가격격차 축소

III. 주요외국의 유가연동제 실시현황

1. 규제현황

가. 최고가격규제국가 :

2. 유가연동제 실시방법

<표-3> 주요외국의 연동제 실시방법

국가	프랑스	이탈리아	스페인	헝가리
실시년도	1982. - 1985	1982. - 1991	1989 -	1990 -
연동기준	로테르담 현물가격과 EC 평균가격 → 정유 공장 출하가격 한도 설정	EC 5개국의 세전공장 도 가격 → 세전공장 도가격 상한가 설정	로테르담 현물시장 가격과 유럽 6개국 소비자가격 → 소비자 최고 판매가격 설정	EC 5개국 소비자가격, 환율, 세율, 수입가격 동향 및 기타요인을 감안 결정
가격조정 빈도	매월	일정폭(10리라/ℓ) 이상 차이시	매2주 ('93.7 이후 매주)	매월 25일 월별가격 발표
해당유종	휘발유, 경유	휘발유, 경유, 난방유	휘발유, 경유, 난방유	휘발유, 경유, 난방유
비 고		LPG는 별도 방식 적용	LPG는 고정가격 기타 유종은 자유화	국영MOL이 가격을 결정하면 타사는 이를 참고

3. 유가자유화 실시이전 조치사항(이탈리아)

- 정유사 및 주유소의 현대화, 합리화로 외국기업에
대한 대응능력 제고

-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억제 및 국내업체 보호를 위
한 각종 장벽 설치

- 유통부문의 계열화 추진

IV. 유가연동제의 효율적 실시방안

1. 유가연동제 실시방안

가. 유가연동제 실시 관련 내용

- 1) 연동기준
- 2) 적용 유종
- 3) 연동공식 설정
- 4) 운영방법
- 5) 시행시기 및 적용기간

나. 연동기준

<제 1안> 국내석유가격을 원유가 및 환율등 원가요소에 연동

- 국내석유가격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의 적기 반영 가능
- 기준원유가로는 실도입 가격을 채택 (FOB)
- 현재의 유가틀과 같으므로 별다른 변화없이 연동제 실시가 가능하며 정확한 반영 가능
- 향후 연동제가 원활히 실시될 경우 기준원유가를 국제바스켓원유 가격기준으로 전환 검토
- 단, 국내공장도 가격구조의 국제수준 접근을 위한 조치 필요

<제 2안> 국내석유가격을 국제시장 제품가격에 연동

- 국내유가구조가 자동적으로 국제화되나 가격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 초래

라. 연동공식 설정

- 유종별 공장도 최고가격 = 종전 세전공장도 가격 × 금월조정요인
 - 금월조정요인 = 금월복합원가 ÷ 연동제 실시시점 기준원가
 - 금월복합원가 = 원유도입관련비용 + 환차손익 + 정제비용

[연동제 실시 시 기준원가가 20,000원/B이고 금월복합원가가 22,000원/B일 경우 유종별 공장도 최고가격 산출 예]

- 휘발유 = 공장도 가격 × 금월조정요인 = $240.41 \text{ 원/l} \times 1.1 = 264.45 \text{ 원/l}$
- 등 유 = 공장도 가격 × 금월조정요인 = $202.83 \text{ 원/l} \times 1.1 = 223.11 \text{ 원/l}$
- 금월조정요인 = $22,000 \text{ 원/B} \div 20,000 \text{ 원/B} = 1.1$

마. 운영방법

- 유종별 최고판매가격은 월 1회 연동공식에 의해 결

- 기준국제가격의 선택문제와 현물시장 가격 고려시 조정요인 추가 필요
-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주변국가 설정에 한계
- 현물시장으로는 지역적으로 균접한 싱가포르 및 걸프(중동)현물시장이 고려되나 현물시장가격이 소비자정책에 의한 제품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.
 - 제품수송비, 관세등 정부부문 비용은 물론 정유사의 고정비 반영 불가피.
- * 따라서, 연동제 초기의 무리없는 실시를 위해서는 제1안(국내도입 원유가 및 환율 평균에 대한 연동)이 바람직함.

다. 연동제 적용유종

- 현고시유종(경유, B-C유)과 휘발유, 등유는 연동제 적용
- 휘발유와 등유는 자유화유종이지만, 현실적으로는 내부기준을 정한 행정지도 가격이므로 내부기준을 연동제 방식으로 전환
- 휘발유, 등유이외의 자유화유종은 연동제 적용제외
- 나프타, 항공유, 용제, 아스팔트,
- LPG는 현행고시제도 유지 또는 별도의 가격연동제 마련
- LPG의 수입의존도(65%), 원유가와 LPG간 가격변동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원유가와 연동할 경우 정확한 원가반영 불가

정

- 가격조정빈도가 너무 잦을 경우 각 경제주체의 적

응에 어려움 예상

- 연동제의 제도적 특징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월1회 변동이 바람직
- 가격결정시 정부와 업계공동 참여
- 매월 15일 기준으로 소비자 최고가격 공시
- 유가의 일시적 급등락시 등 유가완충이 필요한 경우 시행된 기금 및 관세등의 정책변수의 변화는 즉시 반영
- 정제비, 금융비, 운송비등 연동공식상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연 1회 수정

바. 시행시기 및 적용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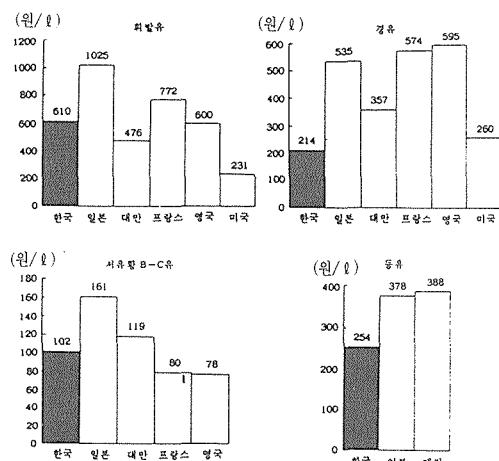
◦ 시행시기

-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정유사 손실보전대책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되 가능한 '94년 상반기 중 실시가 바람직
 - 하반기이후는 석유수요의 성수기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
- 적용기간
- 각 경제주체가 갖은 유가변동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

2. 기존유가의 가격구조상의 문제점

가. 국내유가의 저가유지

<그림-2> 국제소비자 가격 비교



(주) '93. 9월기준임 (단, 대만은 '93. 10월 기준임)

- 정부의 물가관리수단으로 유가관리가 희생
- 선진국에서는 석유의존도 감축과 환경부하 감소 목적으로 석유수요억제를 위한 고유가 정책 견지
- 우리나라는 '86년 이후 8차례에 걸친 유가인하로 저유가정책 견지

나. 국내유종간 가격구조의 괴리

- 제품별 가격은 생산비 측면보다 물가 및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만 관리

<표-4> 국내공장도 가격구조와 협동시장 가격구조

	한국	싱가포르	로테르담	걸프
휘발유 : 경유	1 : 0.65	1 : 0.97	1 : 0.87	1 : 1.01
휘발유 : 등유	1 : 0.84	1 : 0.96	1 : 0.96	1 : 1.00
등유 : 경유	1 : 0.76	1 : 1.01	1 : 0.91	1 : 1.01
경유 : B-C유	1 : 0.54	1 : 0.49	1 : 0.38	1 : 0.43

(주) 1. '93년 8월 가격기준이며, 한국의 수치는 현 고시가격기준임.

2. 자료 : Petroleum Market Intelligence, '93. 9.

- 최근 정부의 석유류 특소세법 개정(안)에 따라 휘

발유와 경유간 소비자 가격구조 왜곡현상 심화우려

<표-5> 석유류 세율조정(안)에 따른 소비자가격 조정 내용

	세율	소비자가격	가격조정액
휘발유	109 → 150%	610 → 718원/l	+108원/l
경유	9 → 20%	214 → 233원/l	+19원/l
등유	0 → 10%	254 → 276원/l	+22원/l

(주) 휘발유와 경유는 목적세인 교통세(가칭)로 전환

다. 국내 유종별 소비자가격 구성 내역

<표-6> 국내 유종별 소비자 가격 구성내역

(단위 : 원/㎘)

	공장도	세금	마진	계
휘발유	240.41 (39%)	317.51 (52%)	52.08 (9%)	610 (100%)
등유	202.83 (80%)	23.09 (9%)	28.08 (11%)	254 (100%)
경유(0.4%)	155.02 (72%)	33.41 (16%)	25.57 (12%)	214 (100%)
B-C유(1.6%)	84.05 (82%)	9.3 (9%)	8.91 (9%)	102.26 (100%)

(주) 1. B-C유는 대리점가격 기준임

2. ()는 구성비율임

V. 유가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

1. 예상문제점

가. 국제가에의 실질적인 연동곤란

- 국내유가의 저수준 및 유종간 가격구조의 괴리에 기인
- 나. 기초에너지원인 석유가격의 수시변동
- 소폭의 유가인상시에도 여타물가에 대한 심리적 파급효과 초래 및 관련산업의 연료비 예측 곤란
- 빈번한 유가변동에 대한 소비자 불만 가능성
- 세무행정상의 어려움 야기(종가세 -> 종량세)

다. 연동제 실시기간중 국제유가 폭등시의 대책강구
(유가완충기금설치)

라. 매점매석 문제

- 경제주체들이 유가인상시기와 폭을 사전에 알게 되므로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혼란 가능성 : 벽, 오지의 판매기피 우려

2. 선행조치

가. 손실보전대책 수립

- 유가연동제 실시 이전에 현재 누적되어 있는 정유사 원유도입손실 보전완료
 - '93. 9 월말 현재 손실 미보전 잔액 : 1,463억원
- 유가연동제 실시 이전에 국제 유가 급등시의 확실한 완충대책 수립 필요
 <예> 유가완충자금 확보: 재원은 유가완충에 즉시 사용
- 나. 유종별 가격구조 괴리의 합리적 조정
- 국내 공장도가격 구조를 국제제품시장 가격구조에 접근토록 개편
 - 상대적 고가유종의 가격은 인하
 - 상대적 저가유종의 가격은 인상
- 유황함량당 가격 차이 확대
 * 석유류 특소세 개편시 ('94. 1. 1 예정) 공장도 및 소비자 가격구조의 조정필요
- 다. 유가관리기준이 되는 정유사 비용/수익의 현실화

- 정제비 실적기준 현실화
- 판매수익의 실가격 수준 반영

라. 유통마진의 현실화

- 유통마진의 저수준에서의 장기고착화
 - 과행적 국내석유유통 관행의 심화
 - 가격경쟁 효과의 소비자 전달 기피요인 상존

<표-7> 무연휘발유의 유통마진추이(무연휘발유)

(단위 : %)

	1987. 10	1988. 6	1989. 3	1991. 7	1992. 6
대리점	4.10	5.67	5.29	4.05	3.48
주유소	6.20	8.40	7.88	6.17	5.26
계	10.30	14.07	13.17	10.22	8.74

(참고) 1. 일본의 휘발유 주유소 마진 : 15.3%('90년 기준)
2. 일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량은 한국에 비해 63.4% 수준

마. 정부의 통제수단 확보

- 유사시 대책 (유가완충기금 설치, 수급우선순위 설정, 비축물량의 상대적 확대 등)
- 공정한 시장 경쟁 감시

바. 홍보 및 행정지도의 강화

- 대국민 홍보 강화등으로 연동제 실시목적과 적정가격 조정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
-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및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
 -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등

VII. 결론

- 국내석유산업의 양적, 질적 성장과 함께 경제활동의 국제화, 자유화 추세에 따라 유가관리제도의 대전환 필요
 - 유가는 시장기능에 맡겨져야 함
 - '94년 상반기가 유가연동제 실시 적기, 시행 후 미비점 보완 전면자유화 실시

○ 연동제 실시방법

- 연동기준 : 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
- 적용유종 : 휘발유, 등유, 경유, B-C유
- 연동공식 설정 : 월1회 최고가격 공시, 정부/업계 공동 참여

○ 유가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등 선행조치가 특히 요구됨

- 손실보전대책 수립
- 유종별 가격구조의 합리적인 조정
- 유가관리기준이 되는 정유사 비용/수익의 현실화
- 유통마진의 현실화
- 정부의 적절한 통제수단 확보
- 유가연동제를 거쳐 유가자유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, 기업 및 소비자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
- 정부는 공정한 시장감시자의 역할 수행으로 에너지 기간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유도
- 기업은 자유화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가격, 품질 및 서비스 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
- 소비자는 가격자유화가 가격인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적절한 가격조정에 대한 수용자세 필요